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박희승·김영호·서영교

홍기원 • 이재관 • 황명선

김 윤 · 김영배 · 민병덕

강유정 · 김준혁 · 김남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미 해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권 논쟁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 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 등은 "동 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과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구분하는 2원적 체계가 아닌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라는 3원적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동물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안 제98조의2, 제764조의2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책임이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
	<u>용한다.</u>
<u><신 설></u>	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
	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
	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
	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
	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
	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
	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
	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